

업무협약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한다)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양 기관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대교협과 재단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2조(협력내용) 대교협과 재단은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육성 지원사업 협력
- 인재육성사업 공동 발굴 및 진행
- 공동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자료제공
- 기타 다각적인 상호 협력방안 모색

제3조(담당자 지정 등) 대교협과 재단의 교류·협력에 있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상호 협의에 의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 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대교협과 재단은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비용) 본 협약의 시행에 따른 협력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상호 합의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

- ①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③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11월 22일



회장 김 영 길

김영길



이사장 이 경 속

이경속